양양 더앤리조트 온천개발계획(변경)에 따른 양양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등)결정(변경)(안) 전략 환경영양명가서 (초 안)

2025. 3.

㈜**더앤리조트** 

## 제 1 장 계획의 개요

## 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- 동해고속도로 개통 및 동서울고속도로 개통, 서울∼속초 고속화 철도 개통예정(2027년),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등 각종 기회요인 및 개발여건 성숙으로 양양군은 관광휴양 도시로서의 기능 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
- ㅇ 그에 반해 현재 양양군은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
- 2005년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폐지와 관광휴양시설 콘도미니엄으로 변경, 숙박시설인 스파트빌리 조트로 운영되고 있었으며, 2017년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폐지를 하였으나, 금회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· 미관을 개선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바,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
#### 1.2 전략화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금회 계획은 2020년 8월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온천개발계획 면적의 변경이 없는바, 온천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, 금회 온천 개발계획 변경시 「온천법」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이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
- 따라서, 본 계획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[별표 2] 제 2호 가목 및 비고 1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

[표 1.2 - 1]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| 구 분          |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          | 협의 요청시기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|--|
| 가. 도시의<br>개발 | 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<br>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<br>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<br>또는 시·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<br>협의하는 때 |  |  |  |  |

비고 1)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

## 1.3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여부

#### 1.3.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

○ 양양군 자연공원, 습지보호지역, 생태·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등의 자연환경관련 보호지역을 조사한 결과, 양양군에는 람사르습지 및 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, 계획지구와 18.2km이상 이격하여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8조(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)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
[표 1.3.1 - 1] 자연환경관련 보호구역 현황

|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| 양양군 | 계획지구내<br>(2km이내) | 이격거리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| 자 연 공 원     | 있 음 | 없 음              | 북서측 27.4km |
| 보 호<br>구 역 | 습 지 보 호 지 역 | 있 음 | 없 음              | 북서측 18.2km |
| , ,        | 생태・경관보전지역   | 없 음 | 없 음              | _          |

주: 1. 자연공원 지정 현황, 2022, 환경부

- 2.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현황, 2025, 환경부
- 3. 생태 · 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, 2025, 환경부

#### 1.3.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, 본 계획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
[표 1.3.2 - 1]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

| 구 분       |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            | 해당여부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|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가목[면적이 100만m² | ×          |
| 가. 도시의 개발 |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, 가목 1)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  | (계획지구 면적 : |
|           | 한다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3,748 m²) |

# 1.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| 구 분        | 주 요 내 용   | 비 고<br>(소유자)  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1992.11.16 | • 사회복지법인 한국양로복지법인 설립인가  | 정상철            |
| 1993.09.07 | •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(강고 제1993-102호): 노인복지시설   |                |
| 1994.03.17 | • 건축허가  |                |
| 1994.03.23 | • 건축착공  |                |
| 1997.05.31 | • 건축사용승인  |                |
| 2003.01.01 | • 지구단위계획구역·계획·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(경과조치)<br>-특정형(준도시지역안의 시설용지지구): 법 부칙 제15조제2항   |                |
| 2004.10.05 | • 온천발견신고  |                |
| 2004.10.06 | • 온천발견신고 수리   |                |
| 2010.10.10 | • 소유권이전<br>[(주)동해실버타운→(주)스파트리빌리조트(명칭변경)]  | 주)스파트<br>리빌리조트 |
| 2005.11.04 | <ul> <li>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강고제2005-265호)</li> <li>-특정형(노인복지시설 허가취소) → 관광휴양형(관광숙박시설:콘도미니엄)</li> <li>-사전환경성검토실시</li> <li>(환경정책기본법, 원주환경청 자연환경과-3867(05.9.23):행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2007.05.10 | • 콘도미니엄 조성사업<br>-사전환경성검토실시<br>(환경정책기본법, 원주환경청 자연환경과-2330(07.5.10):개발  |                |
| 2010.11.02 | •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(강고 제2010-356호), 250,452㎡  |                |
| 2014.06.02 | • 소유권이전   | 주)썬샤인          |
| 2017.08.25 | •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양고제2017-124호): 지적분할   |                |
| 2017.12.29 | • 지구단위계획구역·계획 폐지(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)<br>(양고 제2017-195호)<br>※폐지 사유: 유휴시설 활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(기자숙소)<br>※조건부의결<br>-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폐지(콘도)후 대상지에 적합한 지구단<br>위계획구역 및 계획(생활숙박시설 등)에 관한 군 관리계획이 조속<br>히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|                |

<계 속>

| 구 분        | 주 요 내 용   | 비 고<br>(소유자)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2018.06.25 | • 건출물 용도변경<br>-노유자시설 → 일반숙박시설   |              |
| 2019.03.06 | • 소유권이전   | 주)더앤<br>리조트  |
| 2019.05.08 | • 건축물대장 변경 : 일반건축물 → 집합건축물  |              |
| 2020.08.12 | <ul> <li>온천개발계획 승인(강원도 수질보전과-11021)</li> <li>-온천수 이용 기준량 1,052m³/일</li> <li>-지구단위계획 미수립,</li> </ul> |              |
| 2020.09.29 | • 온천이용허가(1,052m³) 통보(강원도)   |              |
| 2020.11.03 | • 개발행위허가 통보(공작물-숙박업 부대시설) : 1,143m²   |              |
| 2025.01    | • 도시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-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출   |              |
| 2025.02    | •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·항목 등의 결정공개(2025.2.26~3.12)  |              |
| 2025.03    | •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제출·관계기관 의견 청취(예정)   |              |
| 2025.05    | •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제출·협의(예정)   |              |

## 1.5 계획의 내용

가. 사업명: 양양 더앤리조트 온천개발계획(변경)에 따른 양양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등) 결정(변경)(안)

나. 위 치: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-4번지 일원

다. 사업면적 : 53,748 m²

라. 사업기간 : 2024년 ~ 2030년

마. 사업시행자 : ㈜더앤리조트

바. 숭인(허가)기관: 강원특별자치도



(그림 1.5 - 1) 계획지구 위치도



(그림 1.5 - 2) 계획지구 위성사진 및 신축부지 현황사진

#### 사. 사업내용

(1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#### [표 1.5 - 1]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| ſ | 도면표시 | 구역명               | 구역의 세분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비고       |        |    |
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|
|   | 번호   | <b>नवर</b>        | 구력의 세균            | カ ハ<br>                      | 기 정 | 변 경      | 변경후    | 미포 |
|   | 1    | 더앤리조트<br>지구단위계획구역 | 관광휴양형<br>지구단위계획구역 | 양양군 현남면<br>전포매리<br>47-4번지 일원 | _   | 증)53,748 | 53,748 |    |

#### [표 1.5 - 2]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| 도면표시<br>번호 | 구역명      | 변경내용           | 변경사유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          | 더앤리조트    | • 신설           | •계획적·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|
|            | 지구단위계획구역 | • 면적 : 53,748㎡ |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   |

(2)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#### [표 1.5 - 3] 용도지역 결정조서

| 구 분    |        | 면 적(m³) | 구성비(%) | 비고        |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丁 亚    | 기 정    | 변 경     | 변경후    | T'8 41(%) | T H |
| 합 계    | 53,748 | _       | 53,748 | 100.0     |     |
| 계획관리지역 | 53,748 | _       | 53,748 | 100.0     |     |

- (3)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- (가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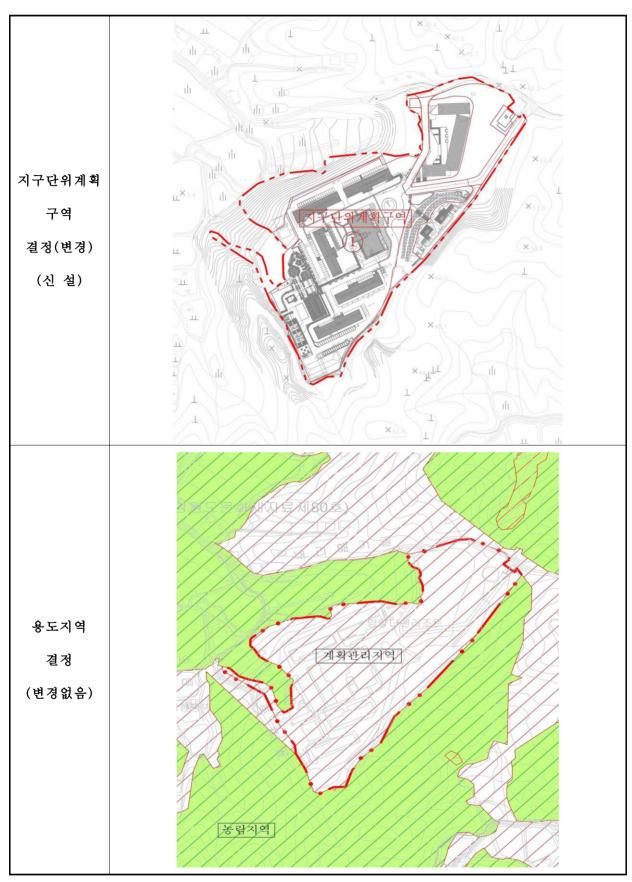
☑ 교통시설

#### [표 1.5 - 4]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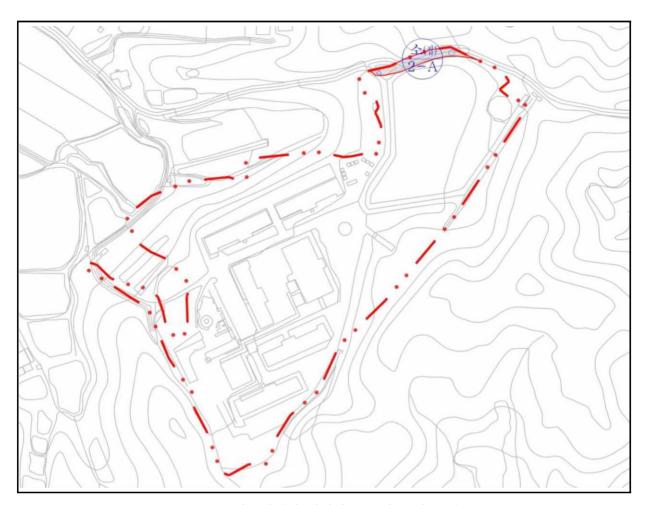
|    |    | 규 모 |    | ch ch     | 연장       | 여기  |                   | 사용               | 주요       | 최초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등급 | 류별  | 번호 | 폭원<br>(m) | 기능       | (m) | 기점                | 종점               | 형태       | 경과지 | 역조<br>결정일 | 비고                 |
| 신설 | 소로 | 2   | A  | 8         | 집산<br>도로 | 76  | 현남면<br>전포매리 47-19 | 현남면<br>전포매리 47–5 | 일반<br>도로 | _   | _         | 농어촌<br>리도<br>202호선 |

#### [표 1.5 - 5]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| 기 정 | 변 경      | 변 경 내 용                     |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  | 소로 2-A호선 | • 노선신설<br>- B = 8m, L = 76m | •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신설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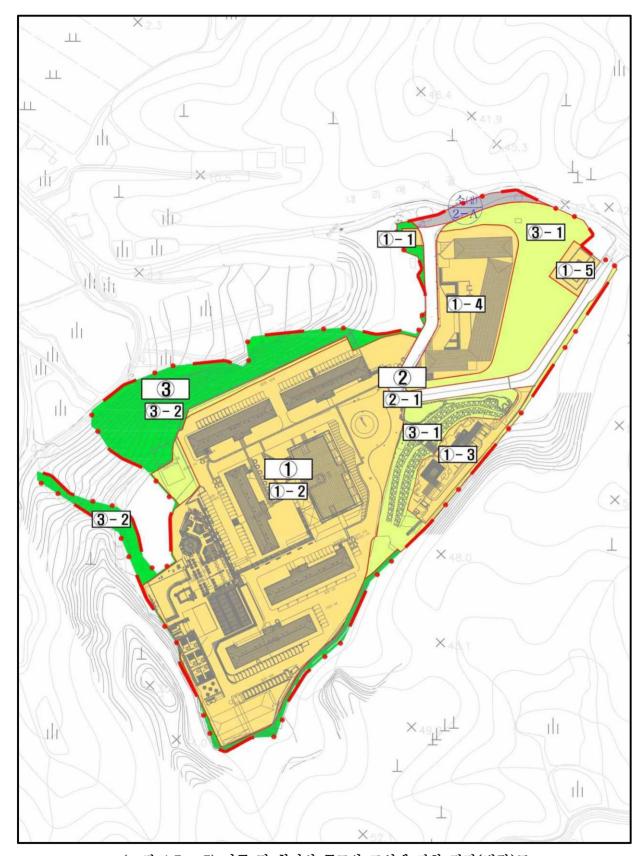
(그림 1.5 - 3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및 용도지역 결정도



(그림 1.5 - 4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(나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| 7). 그      | 가구면적<br>(m²) |          | 획 지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가 구<br>번 호 |              | 획지<br>번호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| 면 적(m²) | 비고       |
| 합 계        | 53,140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| 53,140  |          |
| 소 계        | 34,150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| 34,150  | 관광휴양시설용지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-1      |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-8번지 일원  | 136     | 경비실      |
|            | 34,150       | 1)-2     |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-4번지 일원  | 26,886  | 관광숙박시설 1 |
| 1          |              | 1)-3     |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-7번지 일원  | 2,016   | 관광숙박시설 2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-4      |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-7번지 일원  | 4,511   | 관광숙박시설 3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①-5      |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-9번지 일원  | 601     | 근린생활시설   |
| 소 계        | 2,463        | =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| 2,463   | 공공시설용지   |
| 2          | 2,463        | 2-1      |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-16번지 일원 | 2,463   | 도 로      |
| 소 계        | 16,527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| 16,527  | 녹지용지     |
| <u></u>    | 16 597       | 3-1      |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-9번지 일원  | 9,284   | 기타녹지     |
| 3          | 16,527       | 3-2      |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-13번지 일원 | 7,243   | 원형보전녹지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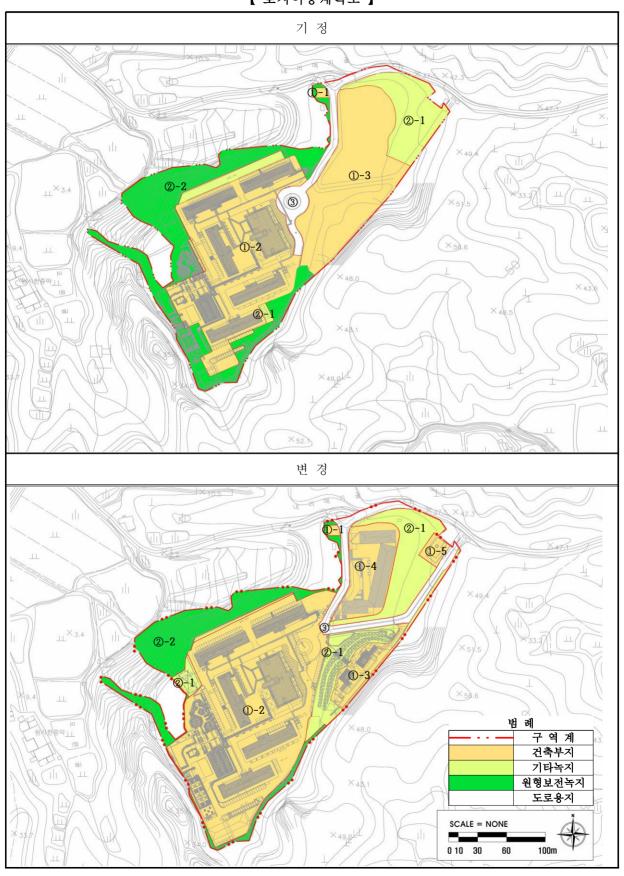


(그림 1.5 - 5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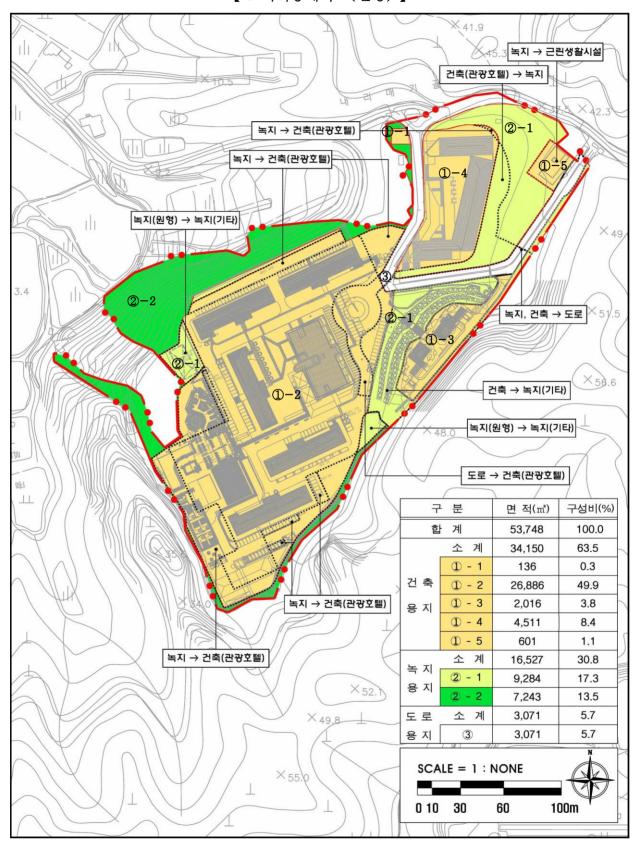
## 아. 토지이용계획

| 7 11     | 도면  | 번호   |          | 면 적(m²)     |        | 7 2 ul | นโ ¬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구분       | 기 정 | 변 경  | 기 정      | 중 감         | 변 경    | 구성비    | 비고             |
| 총계       |     |      | 53,748.0 | -           | 53,748 | 100.0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소   | 계    | 31,700.1 | 증) 2,449.9  | 34,150 | 63.5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①-1 | 1-1  | 136.0    | -           | 136    | 0.3    |                |
| 건축       | ①-2 | 10-2 | 18,958.2 | 증) 7,927.8  | 26,886 | 49.9   |                |
| 부지       | ①-3 | ①-3  | 12,605.9 | 감) 10,589.9 | 2,016  | 3.8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_   | 10-4 | _        | 증) 4,511    | 4,511  | 8.4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_   | ①-5  | -        | 증) 601      | 601    | 1.1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소계  |      | 19,102.9 | 감) 2,575.9  | 16,527 | 30.8   |                |
| 복지<br>용지 | 2-1 | 2-1  | 6,279.8  | 증) 3,004.2  | 9,284  | 17.3   | 오수처리시설<br>지하매설 |
|          | 2-2 | 2-2  | 12,823.1 | 감) 5,580.1  | 7,243  | 13.5   |                |
| 도로       | 소계  |      | 2,945.0  | 증) 126      | 3,071  | 5.7    |                |
| 용지       | 3   | 3    | 2,945.0  | 증) 126      | 3,071  | 5.7    |                |

## 【 토지이용계획도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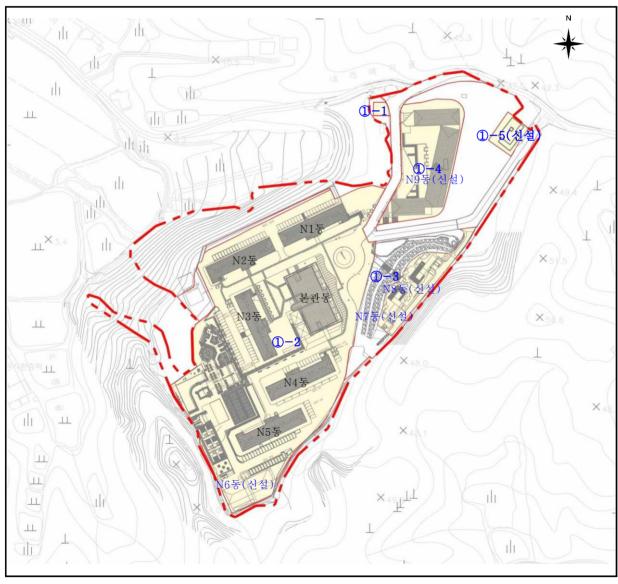
#### 【 토지이용계획도(변경) 】



#### 자. 건축계획

## (1) 건축개요

| 구 분     | 도면<br>번호 | 부지면적<br>(m²) | 건축면적<br>(m') | 연면적<br>(m') | 건폐율<br>(%) | 용적률<br>(%) | 총수<br>(총) | 동수<br>(동)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경비실     | ①-1      | 136          | 50.13        | 50.13       | 36.9       | 36.9       | 지상1       | 1         |
| 관광숙박시설1 | 1-2      | 26,886       | 4,637.06     | 25,728.62   | 17.3       | 95.7       | 지하1~지상10  | 7         |
| 관광숙박시설2 | ①-3      | 2,016        | 238.41       | 310.10      | 11.8       | 15.4       | 지상2       | 2         |
| 관광숙박시설3 | 1-4      | 4,511        | 2,581.84     | 17,224.83   | 57.2       | 183.8      | 지하3~지상6   | 1         |
| 근린생활시설  | 1-5      | 601          | 222.00       | 1,090.0     | 36.9       | 181.4      | 지상5       | 1         |



(그림 2.5 - 6) 건축물 배치계획도

#### (2) 시설세부내역

## (가) 기 조성

## 1) 경비실

| 구 분 | 건축면적(m²) | 연면적(m²) | 비고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|
| 소 계 | 50.13    | 50.13   |    |

#### 2) 본관동

| 구 분   | 면 적(m²) | 비고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계     | 2,817.9 |          |
| 지하 1층 | 496.7   | 기계실      |
| 1층    | 1,152,5 | 로비 및 사우나 |
| 2층    | 1,168.7 | 홀 및 연회장  |

#### 3) N1동~N5동

| 구   | 분      | 바닥면   | 연면적(m')   | 비고        |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동별  | 객실수(개) | 지하1층  | 1층~6층(각층) | 1007(m)   | "I -L |
| N1동 | 72     | _     | 595.44    | 3,572.64  |       |
| N2동 | 71     | _     | 595.44    | 3,572.64  |       |
| N3동 | 39     | _     | 595.44    | 3,572.64  |       |
| N4동 | 72     | _     | 595.44    | 3,572.64  |       |
| N5동 | 66     | 48.24 | 595.44    | 3,620.88  |       |
| 소 계 | 320    | 48.24 | 2,977.20  | 17,911.44 |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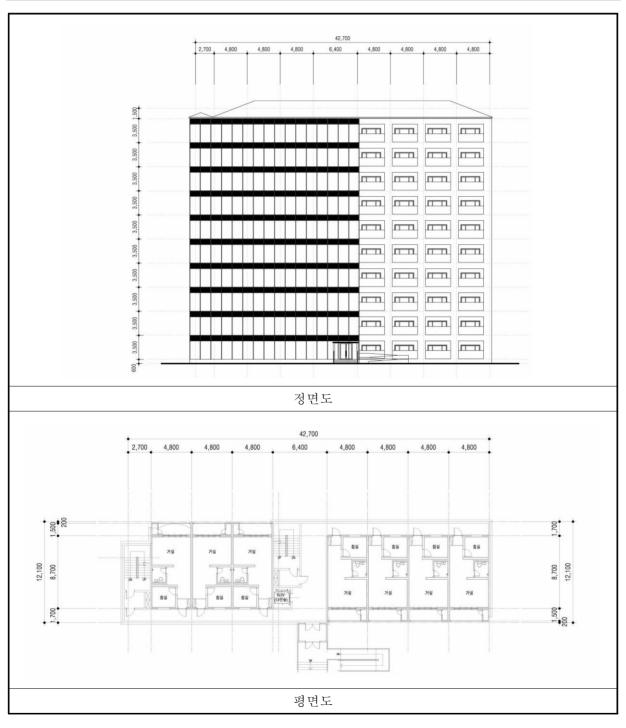


(그림 2.5 - 7) 기조성 현황사진

#### (나) 신 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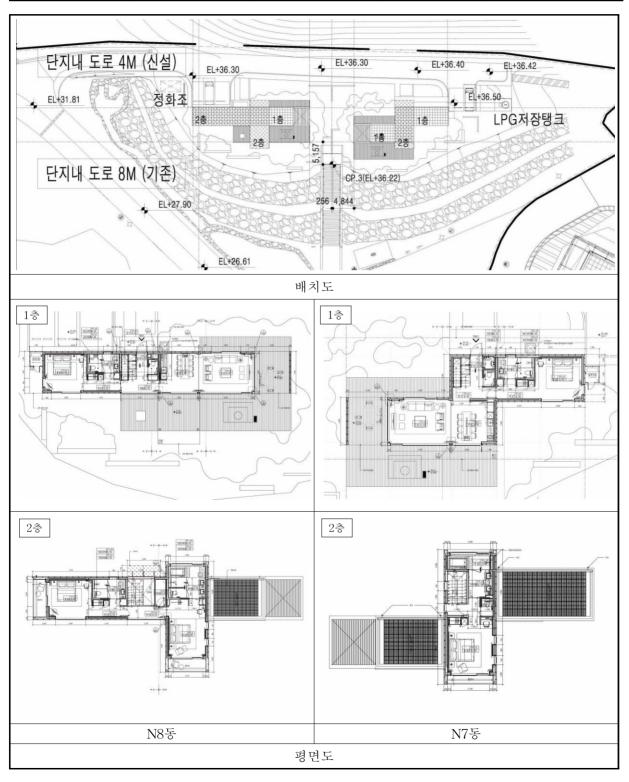
#### 1) N6동

| 구    | 분      | 바닥     | 면 적(m³)      | 연면적(m')         | 비고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동별   | 객실수(개) | 지상1층   | 2층 ~ 10층(각층) | 1 2 2 4 ( III ) | 비포 |
| 기숙사동 | 70     | 506.89 | 499.15       | 4,999.24        |   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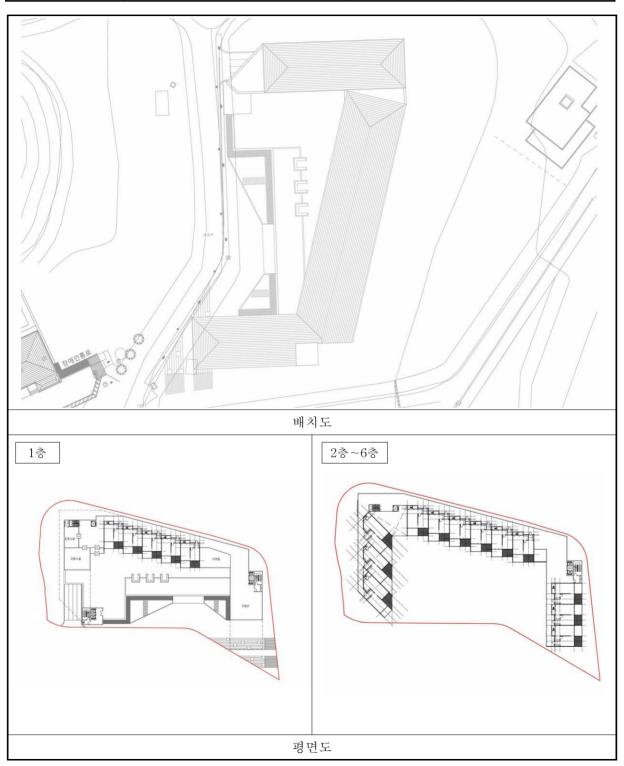
#### 2) N7~N8동

| 구   | 분      | 건축면적(m')  | 연면적(m²) | 비고      | 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|
| 동별  | 객실수(개) | 신국인적(III) | 한한역(m)  | 비고      |  |
| 소 계 | 2      | 238.41    | 310.10  | 각 1동 독채 | 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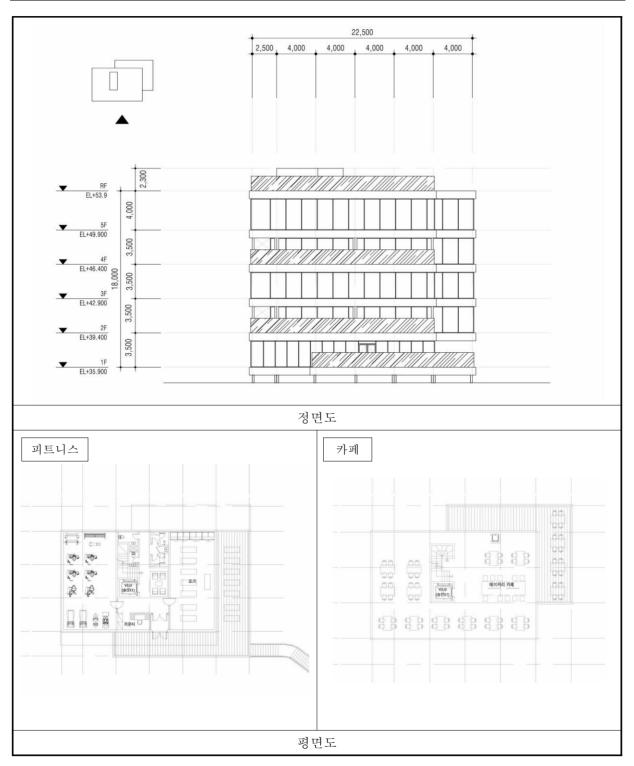
## 3) N9동

|   | 구 분 |        | 건축면적(m')          | 연면적(m²)   | 비고  |  |
|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|
|   | 동별  | 객실수(개) | 신독한석(III <i>)</i> | 한천역(M)    | HI 77   |  |
| Ī | 소 계 | 65     | 2,581.84          | 17,224.83 | <ul> <li>1층: 5개실</li> <li>2층~6층: 각12개실</li> </ul> |  |



#### 4) 근린생활시설

| 구     | 분      | 건축면적(m')  | 연면적(m')  | भो च          |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동별    | 객실수(개) | 신국인식(1117 |          | , –           |  |
| 소 계   | _      | 222.00    | 1,090.00 | • 1~2층 : 피트니스 |  |
| ユ /11 |        | 222.00    | 1,030.00 | • 3~5층 : 카페   |  |



# 제 2장 지역개황

○ 본 계획지구와 관련된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을 조사 범위로 하여 환경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

[표 1.2 - 1] 지역개황 조사 현황

| 7. B                     | 조             | 사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<br>                  | 양 양 군         | 계획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환경보전 용도지역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상수원보호구역                | ○1개소 위치       | ○남애<br>○계획지구 남서측 약 1.7km 이격          |
| ㅇ야생생물 보호구역               | ○1개소 위치       | ○ 강원 양양 현남면<br>○ 계획지구 북서측 약 0.2km 이격 |
| ㅇ배출허용기준(폐수)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 | ○"청정", "가" 지역 | ㅇ"가"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o 습지보호지역                 | ○2개소 위치       | ○쌍호, 가평리습지<br>○계획지구 북서측 약 18.2km 이격  |
| ㅇ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      | ㅇ해당           | ○ 황함유량 이하 0.5% 공급·사용지역               |
| ㅇ수변구역              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ㅇ 자연공원                   | ○1개소 위치       | ○설악산<br>○계획지구 북서측 약 27.4km 이격        |
| ○백두대간보호지역(정맥, 기맥 등)      | ○ 만월지맥        | ○계획지구 서측 약 6.4km 이격                  |
| ○교통소음 규제지역         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| ○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생태 · 경관보전지역            | ○해당사항 없음      | ○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o 수질오염총량지역         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ㅇ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     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ㅇ수산자원 보호구역         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취수장                     | ○3개소 위치 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정수장                    | ○3개소 위치       | ○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문화유산 및 유적               | ○총 42점  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천연기념물                  | ○3개소 위치       | ○계획지구 북서측 약 0.2km 이격                 |
| 3.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페기물 소각시설                | ○1개소 위치       | ㅇ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폐기물 기타시설                | ○1개소 위치       | ○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폐기물 매립시설                | ○1개소 위치       | ○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분뇨처리시설                 | ○1개소 위치       | ○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          | ○23개소 위치      | ○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제3장 환경보전목표

[표 3.1 - 1]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

| 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   | 평가 항목     | 환경보전목표  |  |  |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|--|--|
| 케호          | 획의 적정성            | 싱                 | -위계획 및    | ○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일관성 있게 연계되도   |  |  |  |
| 게릭의 작성성<br> |                   | 관련 계획의 적정성        |           | 록 계획 수립   |  |  |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생물다잉              | -성·서식지 보전 | ○동식물상 서식지 훼손 및 교란 방지 ○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훼손 최소화 ○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전 ○법정보호종 주요 서식지 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| 자연환경의<br>보전       |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    |           | <ul> <li>○ 보전가치가 높은 지질유산 및 특이한 지형 원형보전</li> <li>○ 절・성토사면 발생 최소화</li> <li>○ 백두대간・정맥 등 주요 능선축 훼손 및 단절 방지</li> </ul> |  |  |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자연                | [경관의 보전   | ㅇ주변과 어울리는 경관계획 수립   |  |  |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수환경의 보전           |           | ○ 수질목표 설정<br>- 공사시 : SS 25mg/L 이하<br>- 운영시 : 현황수질 유지  |  |  |  |
| 입지의<br>타당성  |                   | 환경기<br>준의         | 대기질       | ○ 대기환경기준 준수  - PM-10: 24시간 100μg/m³ 이하  - PM-2.5: 24시간 35μg/m³ 이하  - NO <sub>2</sub> : 24시간 60ppb 이하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| 생활환경의             | 부합성               | 온실가스      | ○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방안 제시   |  |  |  |
|             | 안정성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소음・진동     | ○ 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 준수<br>- 공사시 및 운영시 : 주간소음 65dB(A)   |  |  |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환경기를              | 초시설의 적정성  | ○오수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  |  |  |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자원·에너지 순환의<br>효율성 |           | ○발생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  |  |  |  |
|             | 사회·경제환경<br>과의 조화성 | 환경진               | 화적 토지이용   | ○환경친화적 공간계획<br>-식생 및 지형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<br>이용계획 수립  |  |  |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인                 | 구 및 주거    | ○인구 및 주거변화 최소화  |  |  |  |

## 제4장 평가항목 · 범위 · 방법 등의 설정

○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·간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

[표 4.1 - 1] 평가항목의 설정

| ュ      | н              | 평 가   | 범   | 위       |   | 평가범위 선정기준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|---|---|
| 7      | ਦ              | 공간적   |   | 시간적     |   | 생기님의 선생기군   |
| 상위계획   | 및 관련 계획과의      | ○관계 행정기된  | <u> </u>  |         |   | ㅇ계획수립시 상위 및 관련  |
|        | 연계성            |   |   | _       |   | 계획 반영여부   |
| 비아 서구  | 1 . ㅂ서이 저겨서    | ㅇ계획지구 및   | 양   |         |   | ㅇ계획지구를 중심으로 계   |
| 네인 결정  | 3・군식의 식성성      | 양군  |   | _       |   | 획 및 입지 검토   |
|        | 재무리하셔 .        | ㅇ계획지구 및   | 주   | ○ 공사시   | 및 | ○사업시행시 동·식물상에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| 변지역   |   | 운영시     |   |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(식   |
|        | 서식시 보선         | (반경 100~500   | )m)   |         |   | 생훼손 및 서식지 감소)   |
|        | 지형 및 생태축       | ○계획지구 및   | 주   | ㅇ공사시    | 및 | ○사업시행시 지형 및 생태축   |
| 자연환경의  | 보전             | 변지역   |   | 운영시     |   | 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 |
| 보전     | 주변 자연경관에       | ㅇ계획지구 및   | 주   | ㅇ공사시    | 및 | ○사업시행시 위락·경관의   |
|        | 미치는 영향         | 변지역   |   | 운영시     |   |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| ○계획지구 및   | 주   |         | 및 | ㅇ사업시행시 토사유출 및   |
|        | 수환경의 보전        | 변수계(현장시   | <b>-</b> 무  | 운영시     |   | 오수 등의 오염물에 의해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| 소 및 수용하   | 천)  |         |   | <br> 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 |
|        | 2.2            | ○강릉기상대  |   | ○ 2014~ |   | ㅇ계획지구 인접 기상대  |
|        | 기상             |   |   | 2023년   |   |   |
|        | 2 1 -1         | ○계획지구 및 즉   | 6변  | ㅇ공사시    | 및 | ㅇ공사장비 가동 및 연료사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| 지역(반경 300 <sub>1</sub>  | n)  | 운영시     |   | 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 |
| 비원되고시  | 환경기준 부합성       |   |   |         |   |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 |
|        | 온실가스 환경기준      |   |   |         |   | ㅇ사업시행시 온실가스 영   |
| 안전성    | 부합성            | ○ 계획지구  |   | ○운영시    |   | <br>  향 예상  |
|        | 소음・진동          | ○계획지구 및 즉   | 产변  | ㅇ공사시    | 및 | ○ 공사시·운영시 소음·진동   |
|        | 화경기준 부합성       | 지역(반경 300 <sub>1</sub>  | n)  | 운영시     |   | 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 |
|        | 자원 • 에너지       | ○계획지구 및   | _   |         | 및 | ㅇ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 |
|        | 순환의 효율성        | 기물 발생구?   | <u>.</u>  | 운영시     |   | 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 |
| 사하. 겨괴 | 환경친화적          | ㅇ계획지구 및   | _   | ㅇ공사시    | 및 | ○시설입지에 따른 토지이   |
|        | 토지이용           | 양양군   |   | 운영시     |   | 용 변화 발생 지역  |
|        | 시기 미 조기        | ㅇ계획지구 및   |   | ㅇ공사시    | 및 | ㅇ시설입지에 따른 인구 및  |
| 조화성    | 인구 및 주거        | 양양군   |   | 운영시     |   | 주거 변화 발생 지역   |
|        | 대안 설정<br>자연환경의 |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<br>연계성  대안 설정 · 분석의 적정성  생물다양성 · 서식지 보전   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환경의 보전     기상     대기질 환경기준 부합성     소음 · 진동     환경기준 부합성     자원 · 에너지     순환의 효율성  사회 · 경제     환경과의  사회 · 경제     환경과의 | 작 분 공간적  장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○관계 행정기록 연계성  대안 설정・분석의 적정성 양군  이계획지구 및 변지역 (반경 1000~500 지형 및 생태축 이계획지구 및 변지역 변지역 변지역 변지역 변지역 변지역 변지역 이계획지구 및 변지역 변지역 이계획지구 및 변지역 연관경의 보전 변지역 연구계(현장사 소 및 수용하 이강릉기상대 기상 전에 변지의 이계획지구 및 수환경의 보전 변수계(현장사 소 및 수용하 이강릉기상대 연장시 소 및 수용하 이강릉기상대 연관경 300대 전체 환경기준 부합성 지역(반경 300대 자원・에너지 이계획지구 및 수환의 효율성 기운 발생구경 사회・경제 환경과의 중하서 연구 및 주거 양양군 무지의 중하서 인구 및 주거 양양군 무지의 중하서 인구 및 주거 |         |   | 장간적 시간적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이관계 행정기관 연계성 대안 설정・분석의 적정성 이계획지구 및 약 양군 사식지 보전 (반경 100~500m) 지형 및 생태축 이계획지구 및 주 이공사시 및 변지역 운영시 (반경 100~500m) 지형 및 생태축 이계획지구 및 주 이공사시 및 변지역 운영시 우환경의 보전 변지역 운영시 우환경의 보전 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변지역 운영시 2023년 이강릉기상대 이2014~ 2023년 이강릉기상대 이2014~ 2023년 이강릉기상대 이 2014~ 2023년 연건성 환경기준 부합성 지역(반경 300m) 운영시 보험이나 한경기준 부합성 지역(반경 300m) 운영시 자원・에너지 이계획지구 및 주변 이공사시 및 환경기준 부합성 지역(반경 300m) 운영시 자원・에너지 이계획지구 및 주변 이공사시 및 환경기준 부합성 지역(반경 300m) 운영시 사회・경제 환경과의 환경진화적 이계획지구 및 폐 이공사시 및 순환의 효율성 기물 발생구간 운영시 및 한경과의 환경진화적 이계획지구 및 예 이공사시 및 한경과의 환경진화적 이계획지구 및 이공사시 및 한경과의 원경과의 원경과의 인구 및 주거 이공사시 및 연기구 및 주기 이공사시 및 연기구 및 주기 의 의 등자시 및 연기구 및 주기 의 등자시 및 연기구 |

# 제5장 대안의 설정 및 선정

○ 계획수립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

[표 5.1 - 1]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·검토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안 1안  | 대안 2안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|--|
|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| 개발기본계획 수립 (Action)   | 개발기본계획 미수립 (No Action)  |  |  |  |
|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>  | <지구단위계획구역 미수립>  |  |  |  |
| 토지이용<br>측면                  | ○2017년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폐지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 등의 현실화 및 신규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작성   | ○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, 2017년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되었음(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)   |  |  |  |
| 생태계훼손<br>가능성                | ○현재의 이용형태를 유지하여 생태계<br>훼손 가능성 미약함<br>○조경녹지 및 식재계획 등의 저감대책<br>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 | ○일부 생태계훼손은 불가피하나, 개발<br>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훼손에<br>따른 영향은 미미함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환경기준의 유지<br>및 달성에 미치는<br>영향 | ○운영시 녹지 조성 및 식재계획 수립,<br>비점오염저감대책 등의 저감방안 수<br>립으로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에 부<br>합되도록 계획함   | ○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<br>음  |  |  |  |
| 장 점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<li>해당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, 기반시설 조성 및 기건축물 현황 등을 반영하여 당초의 온천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반영함</li></ul>   | ○개발기본계획 미수립시 대상지 내<br>자연환경을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<br>음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단 점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사업시행으로 인해 일부 지형 및 생<br>대계 변화가 불가피하나 적정 저감대<br>책을 수립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할<br>계획임   | ○기 조성된 구역내 건축계획의 변경<br>및 신규시설 설치불가<br>○다양한 서비스공간 및 시대의 흐름<br>에 부합하기 어려움 |  |  |  |
| 선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| ©  | -   |  |  |  |
| 검토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| ○기조성 운영중인 사업지로 2017년 지구단위계획재수립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된 사항으로 온천개발계획을 반영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를 수립하고자 함 ○본 계획수립으로 인한 일시적인 환경오염 가중, 지형변화 및 생태계 변화가 예상되나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별 저감대책을 수립・시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, 해당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, 기건축 현황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・시행하는 대안 1안(Action)을 선정함 |   |  |  |  |

○ 행정계획 수립시(Action) 계획지구 규모에 따른 비교(안)을 선정하여 비교·검토한 결과, 토지매입의 용이성,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**대안 1안을 선정**하였음

[표 5.1 - 2] 규모에 따른 대안별 비교검토

| 구 분             | 대안 1안  | 대안 2안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|--|
| 사업계획<br>구역도     | 338 de   | 50 E  |  |  |  |
| 면 적             | 53,748 m²  | 56,747 m²   |  |  |  |
| 장 점<br>및<br>단 점 | 재이용중인 시설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 | <ul> <li>사업구역 남서측 사유지 토지 수용 문제<br/>발생</li> <li>남서측 증가되는 사유지는 다른 토지이<br/>용계획이 없어 녹지로 계획</li> </ul> |  |  |  |
| 선 정 안           | ©  | -   |  |  |  |
| 검토결과            | • 대안 2안의 경우 사유지 확보에 따라 비용과 기간 소요 및 별다른 이용계획이 없는<br>상태이며, 이에 반해 대안 1안은 현재 이용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등에 대하여 현실<br>화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<b>대안 1안이 타당</b> 한 것<br>으로 분석됨 |   |  |  |  |

# 제6장 평가항목별 환경평가 및 환경보전대책

[표 6.1 - 1] 평가항목별 환경평가 및 환경보전대책

| 항목        | 환 경 평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보전대책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| o 식물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식물상  |
|           | 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공사구간 내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영향이 예상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먼지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-훼손수목 21주 발생예상                    | -이식수목 2주(소나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○육상동물상<br>고기자 사으로지도 드이 여하여 이오 건요로 | ○육상동물상<br>-포유류의 번식기 및 조류의 산란기를 고려                  |
| 동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로ㅠㅠ의 현역기 및 조뉴의 선턴기를 고네<br>하여 장비의 적정투입, 소음발생공정, 야간 |
| .         | 구 주변으로 저수지, 산림 등이 분포하고 있는         | ·  |
| 식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단계별공정 및 저소음·저진동장비 등을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<br>  물  | 훼손 영향은 미미                         | 8  |
| 상         | o 법정보호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강우 시 공사를 지양하고 공사 진척상황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-주로 하천이나 농경지 등에서 활동하는 수달의         | 입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생태적 특성상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          | 지 설치   |
|           | -맹금류 특성상 행동권이 넓고 인위적인 교란에         |  |
|           | 적응 탄력성이 매우 높고, 서식 및 번식 등의         |  |
|           | 생태적 생활사가 확인되지 않은바 사업에 따른          |  |
|           | 영향은 비교적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<br>○토공에 따른 사토 | ○ 사토처리계획   |
|           | -절토량 : 21,600 m³                  | ○^^도시니계획<br>-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및 인근 공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<b>,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| -성토량 : 2,160㎡                     | 사장 등을 활용하여 사토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-사토량 : 19,440m³                   | 이지형변화 최소화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-지형변화지수: 0.80                     | -지형여건 및 자연미 현 지형상태 등을 최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○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                    | 한 고려하여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-공사시 각 공정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로 인          |  |
| 지형        | 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됨            | ○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이지형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토공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질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우기시 가마니 또는 비닐을 덮어 토사유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공사로 인한 현 지형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           | 최소화  |
|           | 으로 판단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| ○보전가치가 있는 지형·지질 및 능선축에            |  |
|           | 미치는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| -적정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미치는 영           |  |
|           | 향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「강원도 경관형성기본계획」,「강원도 동해<br>-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락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벨트 경관계획」,「양양군 경관디자인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$ \cdot $ | 러진 스카이라인을 형성                      | 획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관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녹지조성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16,527 m²  |

<계 속>

| 항목      | 환 경 평 가  | 환 경 보 전 대 책  |
|---------|--|--|
| 수질      | ○ 공사시 -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· 우수유출량: 0.064㎡/sec · 토사유출량: 4.727ton/일 · SS가중농도: 856.136mg/L -현장사무소 오수 10.500㎡/일 발생 ○ 운영시 -계획온천수량: 437㎡/일 -계획급수량: 829.867㎡/일 -오수발생량: 730.880㎡/일 ○ 수질오염총량제 미해당지역                  | <ul> <li>○ 공사시</li> <li>-토사유출 저감대책</li> <li>・우기를 피해 공사실시</li> <li>・다단침사지, 가배수로 설치</li> <li>・오탁방지막 설치</li> <li>・비포장지역에 비닐덮개, 거적 설치</li> <li>-현장사무소 분뇨: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</li> <li>○ 운영시</li> <li>-온천수: 현황 온천공 사용</li> <li>-상수: 기설 지하수공 및 지하저수조를 통해 공급</li> <li>-오수: 기존 개인오수처리시설 증설하여 처리</li> <li>-우수: 기설우수관로에 신규 우수관로를 연결하여 수계 방류</li> </ul> |
| 대기      | ○ 공사시 -PM-10: 25.3~42.0µg/m³ -PM-2.5: 16.3~18.0µg/m³ -NO <sub>2</sub> : 9.020~9.124ppb -전 항목 대기환경기준 만족 ○ 운영시 -PM-10: 22.0µg/m³ -PM-2.5: 16.0µg/m³ -NO <sub>2</sub> : 9.539~11.025ppb -전 항목 대기환경기준 만족 | ○공사시 -유지목표농도 설정 -적재높이제한(상단에서 5cm 이하), 차량운행 속도의 제한(20km/hr 이하) -살수계획 수립 -세륜・세차시설 설치 -방진망 설치계획 수립 -노후경유차 사용제한 -비산먼지저감조치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○운영시 -녹지 계획 -환경정화수종 식재   |
| 가스      | ○공사시 온실가스 변화량 -배출량: 43.5tCO <sub>2</sub> /년 -저장량(감소량): 9.8ton -흡수량(감소량): 0.1ton/년 ○운영시 온실가스 변화량 -배출량: 1,147.3tCO <sub>2</sub> /년  ○공사시 -소음: 48.1~61.1dB(A) -진동: 8.5~19.0dB(V)                        | ○공사시 -에너지 사용량 저감대책 수립 -건설장비 온실가스 발생 저감대책 수립 -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-노후경유차 사용제한 ○운영시 -녹지 계획 -환경정화수종 식재 ○공사시 -운행속도 제한 -저소음・진동 건설기계 사용  |
| ·<br>진동 | -전 지점에서 목표기준 만족<br>○운영시<br>-교통량의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<br>영향 미미   | -작업시간대 및 발생기간 조절 -공사장비 동시투입 지양 및 연속투입 억제 -공사 시행 전 주민에게 사전 공지 및 협의  |

<계 속>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 경 평 가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환 경 보 전 대 책   |  |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|--|
| 환경<br>기초<br>시설<br>의<br>적정<br>성 | ○운영시<br>-계획의 특성상 별도의 오염원 유발시설이<br>없어 계획 시행에 따른 영향 미미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_   |  |   |  |
| 친환<br>경적<br>자원<br>순환           | -폐유 : 3.44L/일<br>-임목폐기물 : 19.3ton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공사시  -건설폐기물 : 전량 위탁처리  -생활폐기물 : 분리수거함 설치 및 위탁처리  -분뇨 :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전량<br>위탁처리  ○ 운영시  -생활폐기물 : 분리수거함 설치, 양양군 폐기물     |  |   |  |
| 환경<br>친화<br>적<br>토지<br>이용      | -분뇨 3.9m²/일 ○지목별 토지이 (계획지구) 지 목 합 계 답 대지             | 용현황<br>필지<br>35<br>32<br>3 | 계 면적(m²) 53,748 53,282 466    | <ul><li>○ 토지 ○</li><li>관광양설지</li><li>광성조</li><li>공시용</li><li>목용</li></ul> | 처리계<br>기용계획<br>구 분<br>총 계<br>조 계<br>경비실<br>관광숙박시설1<br>관광숙박시설2<br>관광숙박시설3<br>근린생활시설<br>소 계<br>도 로<br>소 계<br>기타녹지<br>원형보전녹지 | 면적(m²) 53,748 34,150 136 26,886 2,016 4,511 601 3,071 3,071 16,527 9,284 7,243 | 리 구성비(%) 100.0 63.5 0.3 49.9 3.8 8.4 1.1 5.7 5.7 30.8 17.3 13.5 |  |
| 인구<br>및<br>주거                  | 유입 예상  | ት수요로서 양·                   | 체류형 관광객의<br>양군 및 계획지구<br>= 미미 |   |   | -  |   |  |

## 제7장 결 론

- 동해고속도로 개통 및 동서울고속도로 개통, 서울∼속초 고속화 철도 개통예정(2027년),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등 각종 기회요인 및 개발여건 성숙으로 양양군은 관광휴양 도시로서의 기능 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
- 그에 반해 현재 양양군은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
- 2005년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폐지와 관광휴양시설 콘도미니엄으로 변경, 숙박시설인 스파트빌 리조트로 운영되고 있었으며, 2017년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폐지를 하였으나, 금회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· 미관을 개선하고자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바,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계획을 수립하 고자 함
- 한편, 본 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지형변화, 동·식물상 등 자연환경의 불안정, 서식지 교란 등의 자연환경 및 대기질, 수질, 소음·진동 등의 생활환경상 일시적인 악영향이 예상되나, 공사시 평가항목별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